

의안번호	제 322 호
의결년월일	1995. 12. 28. (제 40 회)

의결 사항	원안 가결
----------	----------



##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 (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 출 년 월 일	1995. 12. 18.

#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2
----------	-----

제출연월일 : 1995. 12. 18.

제출자 :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이 '95. 11. 17. 국회의결되어 개정되는 지방세법과 관련된 군세조례중 주민세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소득합주민세 세율율 당초 "100분의 7.5"를 "100분의10"으로 인상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 주민세 세율 인상에 관한 적용례관 부칙으로 규정하여 소득의 발생시기에 따른 납세의무를 명확히 함(안 부칙 제1조, 제2조)

## 3. 참고 사항

도세정13400-1350('95. 12. 4.)호 「지방세법개정때문조례정바」

## 고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 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중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5조(세율) ① 생략</p> <p>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p> <p>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7.5</p> <hr style="width: 80%; margin-left: 0;"/> <p>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7.5</p> <hr style="width: 80%; margin-left: 0;"/> <p>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7.5</p> <hr style="width: 80%; margin-left: 0;"/>	<p>제15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p> <hr style="width: 80%; margin-left: 0;"/> <p>2. 법인세할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p> <hr style="width: 80%; margin-left: 0;"/> <p>3. 농지세할 : 농지세액의 100분의 10</p> <hr style="width: 80%; margin-left: 0;"/>